시진핑 방북 땐 북·중관계 '복원'… 북·미관계도 '물꼬' 가능성

'내주 초 방문' 보도 나와… 청 "관련 동향 주시, 건설적 역할 기대"
경제 협력·교류 확대 논의할 듯… 북한과의 관계 '관리' 목적 해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시 주석 방북 가능성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북·중 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20일(현지시간) "시 주석이 이르면 다음주 초 북한을 국빈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도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의 지난달 방북과 중국항공사의 베이징~평양 노선 운항 재개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해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시 주석의 방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2019년 6월 이후 두번째로, 북·중관계 복원을 상징하는 장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해당한다. 북·중 우호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침공을 당하면 다른 국가가 군사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인적 교류 활성화 등 북·중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인 현시점에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에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 대화가 "당연히 논의될 것"이라며 "동북아 정세의 지각변동 앞에서 한반도의 안정, 평화, 공동번영을 전략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금으로선 (북·미 간에) 특별한 접촉은 있지 않은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베이징에서 중·러 정상회담이 개최된 만큼 시 주석의 방북은 북·중·러 협력이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해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톈안먼 망루에 나란히 올랐다.

전문가들 사이엔 시 주석이 방북한다면 북·미관계 개선이나 북·중·러 협력 차원보다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하려는 목적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중국의 최대 관심사는 미·중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이 미·중관계에 변수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중국은 투자 등 교류·협력 강화로 북한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주재우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는 "현재 미국과 북한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고, 북한이 핵 군축을 하더라도 미국이 대가로 제재 해제나 수교를 해주는 건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했다.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쏠려 있는 상황을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며 "북·중·러 3국은 장관급 수준에서의 회의체도 없어서 3국 협력 차원이라고 보는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병관·김원진 기자 bgk@kyunghyang.com

"한·미·일 강력한 동맹 필요 쿠팡 등 미 기업 차별 안 돼"

스틸 주한미대사 후보 청문회
"한국의 3500억달러 투자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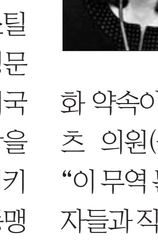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첫 주한미국대사 후보로 지명된 미셸 박 스틸 후보자(사진)가 20일(현지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쿠팡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 사실상 동맹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 후보자는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공화·아이다호)이 갈수록 악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견해를 묻자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그것이 한·미·일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간 3국 협력을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문회에서는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와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계획, 미국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스틸 후보자는 '쿠팡 등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빌 해거티 의원(공화·테네시)의 말에 "지난해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서)에는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게 명시돼있다"면서 "제가 인준을 받는다면 이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농산물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완화 약속이 지켜지게 해달라는 피트 리게츠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의 당부에는 "이 무역 문제를 관장하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직접 마주 앉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스틸 후보자는 또 "팩트시트에 따른 한국의 3500억달러(약 526조원) 대미 투자 자금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투자 재원과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상원 외교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스틸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내 최측근인 해거티 의원은 "내 딸들이 방탄소년단(BTS) 콘서트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 청문회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스틸 후보자를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스틸 후보자는 언제든 백악관에 들어가 직보를 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남편인 숀 스틸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의장을 지내 공화당 주류 세력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워싱턴 | 정유진 특파원 sogun77@kyunghyang.com

한·미 합동 추모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21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한·미 합동 현충일 추모 행사에서 한·미 장병들이 미국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국방부 "전작권 전환, 이르면 내년 중에 가능"

한·미, 시기 '의견 차' 변수… 한국이 DMZ 철책 이남 관리 방안도 진전

군 당국은 올해 하반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연도가 설정되면 이후 1년 내에 전작권 전환의 마지막 검증·평가 단계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방부 관계자는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작권 전환 절차와 관련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X연도'(전작권 전환 목표연도)가 결정되면 바로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FMC 평가·검증을 한 다음에 전작권 전환 최종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령부를 대신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군당국은 FMC 평가·검증을 1년 정도면 완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2027년을 전환 목표 연도로 제시한 뒤 1년 안에 FMC 평가·검증을 하면 2027년 내 특정 시기를 전작권 전환 일자로 건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12~1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한·미 인식차가 확인된 만큼 변수는 남아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대전 양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가 들어서고 전쟁수행 방식이 바뀌었다"며 "그 부분에서의 능력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 한·미 간 의견차가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한·미 공동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SCM 이전에는 로드맵을 완성하고, 로드맵에는 전작권 전환 및 이후를 준비하는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이날 전작권 전환을 두고 "조건에 기초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KIDD에서는 한국이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남 지역 관리 권한을 갖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국 측은 군사분계선(MDL) 기준 남쪽 2㎞에 해당하는 DMZ 남측 구역 중 철책 이북 지역은 기존대로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을 갖되, 철책 이남 지역은 한국군이 인원 출입에 대한 승인권·관할권을 모두 행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도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다"고 했다.

유엔사는 DMZ 구역 관리권은 미국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지속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거제시 공고 제2026－1245호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편입 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22일

거 제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비고
장승포3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거제시장	거제시 장승포동 385번지 일원	급경사지 정비사업	2026. 05. 20. ~ 2027. 12. 31.	

2. **보상 대상** : 편입토지 및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권리관계 일체(세목은 붙임 참조)
- 장승포동 385, 446-15, 446-13, 445-20, 447, 447-22, 447-17, 447-13, 447-14, 447-15, 447-12, 465-14, 465-11, 465-10, 465-13, 465-12, 465-7, 465-55, 465-54, 465-4, 447-20, 447-21, 447-16, 465-29, 465-49, 465-15, 465-17, 465-5, 465-33
※ 토지 및 물건(세목)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주소나 거소 불분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열람·공고 기간이 끝난 다음 감정평가 후 보상대상자 개별 통지(법적 절차 진행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 3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협의 → 협의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등기 → 보상금 수령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수용재결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6. 5. 22.(금) ~ 2026. 6. 5.(금)(15일간)

나. 열람장소
- **거제시청 도로과 : 경상남도 거제시 계룡로 125 [T.055-639-4494, F.055-639-4469]**
- **손실보상대행사 국토보상원: 경상남도 진주시 갈전길 13-6, 국토보상원 [T.010-9437-4440]**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 방법은 열람 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 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열람 기간 내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상계획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나 주소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열람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성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합니다.

라. 조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마. 이 공고 후에 설치하는 지장물, 수목 및 영농행위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 및 해당 공고로 갈음합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거제시 도로과로 문의(☎ 055-639-449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B구역 공고 제2026－11호

토지등 소유자 소재 확인 공고(2차)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의 구역내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사업 시행자**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사업의 명칭** :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
3. **사업구역내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물 내역**

구 분	등기부등본상 소재 지번	면 적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27	40.60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9	107.94
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10	48.00
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20	78.97
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40	71.28
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3-05	15.21
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12	49.29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77-19	53.89
9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28	59.79
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11-05	130.63
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1-11	32.82
12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9	53.74
13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03	22.17
14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47	52.36
15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94-06	41.04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3-02	76.74
17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203-04	72.56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11-51	92.61

4. 위 소재지 지상 건물중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하여 공고하며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1조에 따라 해당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 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항의 건물내역이 명백히 제3자의 소유권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재지번 조합원의 종전 감정평가금액에 합산하여 권리가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위 제3항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건물 내역의 소유자는『대전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한 소유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증빙이 되야 합니다.

조합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43 605호(봉명동, 대전유성신협 신사옥)
조합사무실 전화번호 : ☎ 042-822-7793

2026. 05. 22.

장대B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임 은 수(직인생략)

상속한정승인공고

피상속인 망) 나영규 [840101－1******, 2025. 12. 29. 사망, 최후주소 : 경기도 이천시 서희로8번길 9-5, 306호 (중리동)]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또는 유증을 받은 자들께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공고기간(2026년 5월 22일～2026년 7월 22일)내에 채권 또는 수증 등을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치 않으시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알립니다.

○ **한정승인 수리일** : 2026년 5월 18일
○ **사건번호**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6느단2253
○ **청구인 (상속인)** : 나도천
○ **신고처**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서천향교길 73-2, 디동 102호 (신흥빌라)

광고문의

- 본사광고국 02)3701-1500
- 경기인천지사 031)918-9695
- 대전세종충청지사 042)253-9027
- 영남지사 051)469-4400
- 호남지사 010-9119-6280

사진이 필요하십니까?

경향신문이 직접 취재한 국내외 뉴스, 인물, 자연, 스포츠 이미지 고품질 사진과 영상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경향포토뱅크에서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 잡지 및 출판물 | 사보 및 기업 홍보물

"필요한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세요"

문의 02-3701-1636 / 1637
photobank@kyunghyang.com

경향포토·기사DB

서로 완벽하게 섞여서 더 나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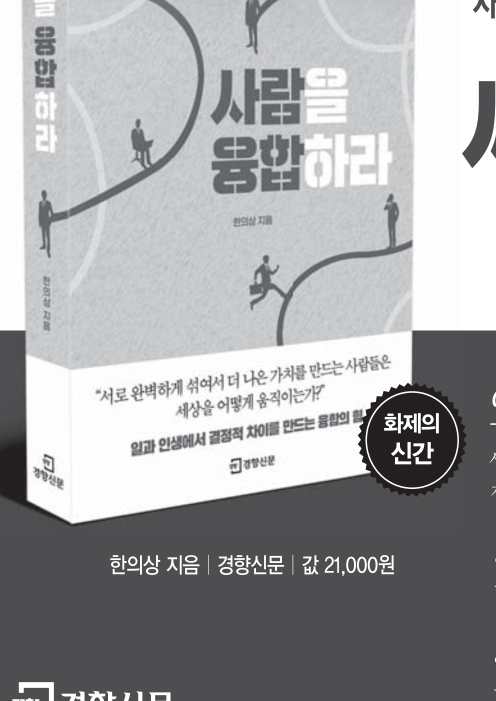

화제의 신간

팜젠사이언스 한의상 회장이 전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예술적 융합의 비밀

사람을 융합하라

한의상 지음 | 경향신문 | 값 21,000원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사람에 대한 융합이 어떻게 한 사람을 용접공에서 제약회사 회장으로 이끌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 경이롭습니다.
_박수복 전 인천지방국세청장

이 책은 믿음의 씨줄과 사랑의 날줄로 엮어 간 한의상 회장의 자기 고백서라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_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 책은 매혹적인 서사로 위대한 예술가들 사이를 연결하는 융합의 발걸음에 빛을 밝혀 주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줍니다.
_최희문 메리츠금융그룹 부회장

경향신문